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-474호
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학교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381-1호에 위치한 서울도솔학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 학교) 결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2023-987호(2023. 7. 20.)로 주민의견 청취하고, 2026년 제11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(2026. 6. 30.)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학교) 결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와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6년 8월 20일

서울특별시장

가. 결정 취지

-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수학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학교) 결정을 통하여 특수교육대상자들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,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와 과밀학급 해소 등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

나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1) 도시계획시설(학교) 결정(신설) 조서

구분	도면표시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 치	면 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 후		
신설	-	학교	특수학교	도봉구 도봉동 381-1	-	증)6,966	6,966	-	-

2) 도시계획시설(학교) 건축범위 결정(신설) 조서

건폐율 (%)		용적률 (%)		높이(층수)	건축 제한 완화	비고
기정	변경	기정	변경			
-	35 이하	-	110 이하	4층 이하	-	자연녹지지역, 개발제한구역

3) 도시계획시설(학교) 결정(신설) 사유서

도면표시 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-	학교	○ 특수학교신설 A = 6,966㎡ (증)6,966㎡	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있던 학교시설의 노후화가 가속되어 학생의 안전 및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·군계획시설로 지정하여 관리하고자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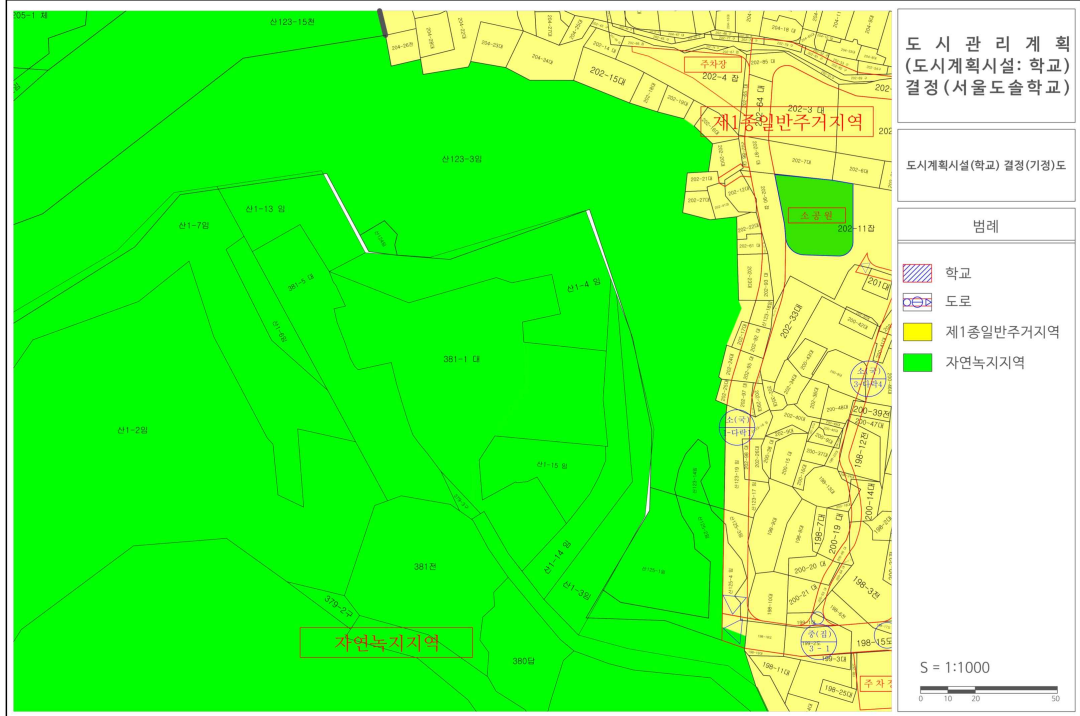
다. 관계도면: 붙임 참조(세부 관계도면은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 참조)

※ 첨부된 지형도면 등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라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(☎ 2213-8413), 도봉구 도시계획과(☎ 2091-3554)에 관계도면을 비치하고 있습니다.

※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서울도시계획포털(<http://urban.seoul.go.kr>) 및 토지이음(<http://eum.go.kr>)에도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

■ 도시계획시설 결정(기정)도



■ 도시계획시설 결정(변경)도

